식품의약품안전처	보 도 자 료		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자	2022. 1. 17.(월)
담당과장	마약정책과 김일수 (☎043-719-2808)	담당자	임상우 사무관 (☎043-719-2801)

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

- 1월 17일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**거짓·부정한 방법**으로 **마약류 취급 허가·승인**을 **받은 경우**에 대한 **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**을 **마련**하는 **내용 등**의 **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**(총리령)을 **1월 17일 개정·공포**하고 **즉시 시행**합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 **▲거짓·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▲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*** **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▲의사·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**입니다.

*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·사용·조제·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

1 거짓·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

○ **▲마약류취급자 (변경)허가 ▲원료물질*** **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(변경)허가 ▲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·수출입 (변경)허가 ▲마약류 취급승인**** 등을 **거짓** 또는 **부정한 방법**으로 **받은 경우** 그 **허가 등**을 **취소**하도록 **행정처분 기준**을 **마련**했습니다.

*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

** 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, 무역거래자가 마약류 구매 알선을 위한 취급 등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

○ **(경미한 취급보고 위반 처분 완화) 품목코드,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**을 **보고하지 않는 경우** 현행 **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**(종전: 7일)로 **완화**하고, **보고기한**을 **초과**해 **보고**하는 경우 **경고**(종전: 업무정지 3일)로 **행정처분 기준**을 **완화**합니다.

- 또한 **마약류 취급자**가 **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**에 **마약류 취급내역**을 **보고**할때 종전에는 **전산 장애**로 인해 **보고**가 **누락**된 것이 **확인**된 **경우**만 **행정처분 감면 대상**으로 인정됐으나

-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**전산 장애**로 인해 **실제 보고한 내용**과 **다르게 보고**된 것이 **확인**된 **경우**까지도 **감면 대상**으로 **인정**됩니다.

○ **(처방전 기재)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** 중 **일부**만 **기재하지 않은** 경우 마약류 **취급업무 정지 1개월**(종전: 3개월)로 행정처분 기준을 **완화**합니다.

○ **(변경보고 기한)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**에 **변경**이 **발생**하는 경우 취급 보고 **종료일 이후**에 **변경 보고** 할 수 있는 **기한**을 **14일**(종전: 5일)로 **연장**했습니다.

3 의사·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

○ **자동**으로 **마약류취급의료업자·마약류소매업자***가 되는 **의료기관 종사 의사·약국 개설 약사** 등이 **'허가취소'**에 해당하는 **위반**을 한 경우 **'업무정지 12개월'**에 처하도록 **명확히 규정**했습니다.

* 종전에는 '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'허가취소'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'한다는 처분기준을 준용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**국민 건강**과 **안전**을 **최우선**으로 **마약류 안전 관리**에 **최선**을 다하고 **마약류**가 **불법 유통**되어 **오남용**되지 않도록 관련 **제도·법령**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'**마약제로 프로젝트**'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